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집

□ 개 요

- 일 시 : 2022. 02. 24(목) 오후 13:30 ~ 16:30
- 장 소 : 온라인
- 주 최 : 대한화장품협회

□ 주요 내용

-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정책·제도 설명
 - 포장검사제도 및 재포장 금지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분리배출표시제도

□ 질의응답

1. 포장재검사제도 및 재포장 금지 관련

Q1. 재포장 과태료 부과대상?

- A. 재포장 주체인 제조 수입 업체 외 판매자도 함께 과태료 처분
 - ⇒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 사가 판매한 경우 A사, B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
 - ⇒ A사에서 납품 받은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B 판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이미 받았더라도, C 판매자가 동일한 재포장 제품 적발일 前 A사 제조 판매한 경우도 해당

Q2. 중소기업인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 시 과태료 부과대상?

- A. 과태료 대상
 - ⇒ 중소기업인 제조업체 가 생산과정에서 재포장 후 출고한 경우 '20.7.1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 ⇒ 유통사·대리점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할지라도 '21.1.1 일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됨

Q3. 포장방법 기준과 재포장 금지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A. 모두 준수해야 함

⇒ 날개로 판매되는 제품 2 개를 필름으로 묶은 포장 형태 예 : 우유 2개 헤더백 포장

① 포장횟수 기준 : 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1 차 기준 이내

② 재포장 금지 기준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2 조 3 호에 해당되어 재포장

Q4.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하거나 1개 제품 추가 포장의 재포장 여부?

A.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별도로 포장방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Q5. 재포장 제품을 온라인 업체로 납품 시 과태료 처분 대상?

A. 대상

⇒ 해당 제품을 납품한 제조 수입한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

⇒ 다만 ,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자는 재포장 금지 규정 적용대상 아님

Q6. 4개 묶음 포장은 재포장에 해당되는지?

A. 제2조(정의) 제3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타 조건 제 1, 2호도 검토해야 함

⇒ 무조건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잘못된 해석

Q7. 판매 과정 또는 행사기획 목적인 '3개 묶음 포장의 적용 시점?

A. '21. 01. 01.

⇒ 제2조 제3호에 따른 3개 포장이라 하더라도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되는 경우, '21.1.1 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적용됨

Q8. 날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의 의미?

A. 껌, 사탕 등과 같이 날개의 개별 포장은 판매되지 않으며, 이를 묶은 형태가 단위제품 최소판매단위인 경우

Q9.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 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사례?

A. ① 생분해성 필름·시트 ② 날개 미판매 3개 이하 묶음 제품

⇒ ① 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100% 바이오 매스기반 수지로 제조된 필름·시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포장 금지 위반

⇒ ② 날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 바코드 미표시 제품에 한함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Q10. 제조일이 각각 다른 제품 2 개를 함께 포장한 경우 판단 방법?

A.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의 제조일자 를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 여부 판단

⇒ (예) ['20 년 제조 제품 ++ '21 년 제조 제품] 묶음인 경우 '21 년 제조 제품의 제조일자

Q11. 세트 포장도 재포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완제품 각각 단상자 포장 3 개를 세트로 구성

A. 해당

⇒ 날개 판매되는 제품 3 개 이하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 시트로 포장한 경우 재포장

⇒ 세트 포장도 결국 묶음 포장

Q12.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고정재 적용인 경우 제품 가로·세로·높이에 5mm를 더하는 것인지, 10mm를 더하는 것인지?

A. 5mm 가산

⇒ 단 , 2020 년 7 월 1 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은 개정 전 기준 (10mm) 적용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별표2] 1-8.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필요공간용적 가산

“(생략) 외접하는 최소한의 정육면체의 체적에 가로(장), 세로(폭), 높이(고) 방향에 대해서 각각 5mm(2.5mm × 2) 씩을 더하여 가산 제품체적을 산출한다

Q13.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0%이내의 내용이 1차 포장, 2차 포장 각각 구분되는 건가요?

1차 포장(예: 60ml 정량튜브 사용)에 50ml를 충전하고, 이를 포장하는 2차 포장(단상자) 표시용량이 50ml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A. 2차 포장 대비 1차 포장, 1차 포장 대비 내용물 모두 포장공간비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Q14.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기준은 바코드 일까요?

A. 바코드로만 최소판매단위를 판단하지 않으며 거래명세서, 매출전표, 납품내역서, URL 등 실제 판매되는 증빙을 통해 최소판매단위를 판단

Q15. 재포장 예외기준에서 날개로 판매하지 않는 ~ 조항에서, A마트에서는 날개로 판매하고 B마트에서는 번들형태로만 판매하는데 그럼 B마트에서는 재포장 예외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A. 유통채널, 납품형태와 관계없이 날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판단

Q16. 날개로도 판매되고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팩 1장도 판매하고 단 상자에 10개 넣어 판매하는 경우

- A. 포장방법 기준, 재포장 금지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함
⇒ 팩1개 = 단위제품(최소판매단위)인 경우
- 포장횟수 : 팩1개(단위1차), 팩10개 묶음(종합1차)로 판단됨
 - 포장공간비율 : 팩1개(기준10%이하), 팩10개 묶음(기준 25%이하) 준수하여야 함
 - 재포장 : 1개 포장 또는 묶음포장 재질이 종이인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아님

Q17. 단위포장 제품 2개 또는 3개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완충제로서 뽁뽁이로 싸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 또한 재포장 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A. 통상 에어캡은 수송목적의 완충재로 볼 수 있으나, 에어캡으로 싸 형태 그대로 판매되는 경우 포장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음. 또한 재포장 여부는 실물형태로 제품구성, 포장형태, 포장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임

Q18. 세럼, 토너, 크림 3종을 세트 포장할 때 단상자를 빼고 포장해야 되나요? 문제는 저희 제품은 유리용기에 담겨있어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 포장이 허용되나요?

- A. 상기 제품이 종합제품인 경우 2차 이내 포장 가능
⇒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Q19. 판매중인 제품 2가지를 단상자 채로 세트용 신규 단상자에 넣어서 포장하는 경우 재포장인가요?

- A. 묶음포장 재질이 종이인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아님

Q20. 화장품 앰플 포장 시, 단상자에 고정재(게또바시)를 넣고 유리바이알 앰플 넣어도 재포장인가요??

- A. 묶음포장 재질이 종이인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아님

Q21. 단위제품이 2차포장재를 사용한(용기+단상자) 제품들을 세트포장(단상자)로 한번 더 포장 할 경우 3차포장으로 적용되나요? 이경우에는 기존 단위제품을 1차포장재로 해체하여 세트포장 해야 하나요?

- A. 상기 제품이 종합제품인 경우 2차 이내 포장 가능(종합제품 1차로 판단되어짐)
⇒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Q22. 해외 수출용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받지 않나요?

- A.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100% 수출제품인 경우 포장방법 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Q23.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기준 신설 관련하여, 해당 기준은 그림 택배박스에도 적용되나요??

- A. 현재 세부내역 정해져있지 않음

Q24. 단일포장 예를 들어 날개 비닐류 포장되어있는 (내용물 5g) 것을 단상자로 포장 후 비닐로 포장하여도 해당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A. 재포장 정의 3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타 조건(1, 2호) 적용여부도 검토해야 함

Q25. 화장품 구성품 > 파우치 > 2차 단상자 형태의 세트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계산 방법?

- A. 2차 포장 대비 1차 포장, 1차 포장 대비 내용물 모두 포장공간비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장 내측 부피 대비 제품 체적을 뺀 공간의 비율로 계산함
⇒ 단위제품이며 상기 명시된 '구성품'이 내용물을 담은 용기인 경우 포장횟수는 3차(용기+파우치+단상자) 판단되므로 검토 필요

Q26. 완제품 3개(2차포장 상태) 세트 포장도 결국 묶음 포장으로 간주하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만약 그 세트 포장이 합성 필름/시트가 아닌 종이 상자로 묶인다면 재포장과 포장횟수 위반에 해당될까요? 만약 1차 포장 상태로 세트 구성하면 포장 횟수는 준수하는 것이지요?

- A. 종이재질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으며, 포장횟수의 경우 상기 제품이 종합제품이라면, 2차 이내 포장 가능(종합제품 1차로 판단되어짐)
⇒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Q27. 포장공간비율 산정 시, 고정재를 사용하면 5mm 용적 가산되는데, 구성품 2개 이상이 묶여진 세트인 경우 구성품 각각 5mm씩 가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개의 구성품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고정완충재가 사용되어진 구성품에 대하여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 각각 5mm씩 가산

Q28. 튜브 제품의 1차 포장 공간 비율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A. 포장용적(내측부피) 대비 제품체적을 제외한 공간의 비율로 산출되어짐

Q29. 화장품의 경우 예를 들어 용기+단상자+수축필름 포장인데 수축필름 포장도 포장횟수에 포함되나요?

A. 단위제품인 경우에만 화장품의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음

Q30. 완충재를 얇은 습자지 여러개를 겹쳐서 완충재/고정재로 사용하는 경우, 습자지 여러 장을 겹쳤을 때의 두께를 기준으로 완충재 두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습자지 1장을 기준으로 완충재의 두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A. 두께 1mm이하의 평면 속지 및 테이프, 접착제류 등에 의한 고정은 완충고정재로 보지 않으며 필요공간용적을 적용하지 않음

Q31. 각자 틀린 제품 3가지를 세트 단상자로 묶으면 묶은 포장인가요?

A. 재포장 금지기준 관련 문의사항으로 이해되며 묶음포장 재질이 종이인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아님

Q32. 소용량의 여러제품들(각 제품 날개로는 판매 안함)을 모아서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제품이 아닌 단위제품에 해당되나요??

A. 단위제품에 해당

Q33. 포장검사제도에서 9g짜리 단위제품 4개를 종합제품으로 판매 시 총량이 36g으로 50g 이하이니까 단위제품, 종합제품 모두 포장공간비율이 적용 안받나요?

A.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예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Q34. 여행용키트로 나오는 화장품 세트는 파우치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포장재로 카운팅이 되나요??

A. 포장으로 판단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관련

Q1. 도포척합표시를 한 경우에도 재활용 어려움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 A.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및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은 별개의 고시이므로 각각 고시에 맞게 표시해야함. 따라서 도포척합 표시 후 해당 분리배출표시 상단, 하단 또는 측면에 재활용 등급 표시

Q2. 30ml이하 제품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대상인지?

- A.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1호 내지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 수입하는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 단,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바이알, 앰플, PTP포장, 병모양이 아닌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ml 이하 또는 30g이하인 제품은 EPR 비대상으로 평가 비대상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호에 따라 등급표시는 생략가능

Q3.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은?

-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재활용의무면제 대상 업종과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조항에서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활용의무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업자는 매출액·출고량 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업자는 수입액·수입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출고량, 수입액·수입량 규모 중 하나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재활용의무가 발생한 포장재는 재활용등급평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의무가 포장재 A에 대해 발생하고 포장재B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포장재 A에 대해서만 재활용등급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4. 등급평가 제품별이 아니고 동일한 재질구조면 대표 1품목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재질구조 같은데 용량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A. 재질구조가 동일하다면 용량과 관계없이 1개의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등급평가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유리병 평가 시 무색/녹색/갈색등의 색상은 우수등급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색상기준이 맥주병/소주병 등 색상이 일률적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명유리에 코팅을 통하여 녹색/갈색등의 색상을 표현을 한것도 해당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A.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상 유리병 색상은 육안 상 혹은 기기분석에 의해 무색/갈색/녹색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무색/갈색/녹색으로 평가합니다.

Q6. 등급 의무면제 포장재의 경우는 등급판정은 받되 표시만 하지 않는 건가요?

- A. 등급 의무면제 포장재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포장재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등급평가를 받되 등급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포장재이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5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제품 중 IBC용기에 납품하여 출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제프레임에 HDPE내피가 결합된 품목입니다. 이럴 경우 철제프레임과 HDPE를 모두 평가결과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내피 HDPE만 평가결과를 받아야하는지?

- A. IBC 용기는 내용기(일반적으로 PE재질)와 외용기(철제 프레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 가능한 용기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용기 재질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8. 재질은 HDPE로 동일한데 공급받는 업체가 다를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신청해야 할까요??

- A. 포장재 납품업체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한 재질구조이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Q9. 녹색/갈색 코팅 용기가 매 로트마다 색상편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매 로트마다 재질구조평가를 진행하여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문의하신 내용은 유리병 포장재의 색상 판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상 유리병 색상은 육안 상 혹은 기기분석에 의해 무색/갈색/녹색인지 판단하고 있으며 각 로트별 생산되는 유리병의 색상이 무색/갈색/녹색이 아닌 무색/갈색/녹색 이외의 색상으로 판정된다면 다른 재질구조에 해당하므로 각각 평가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10.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이더라도 굳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용량이 20mL인 제품입니다.

- A. 문의하신 내용은 평가결과 표시예외 포장재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5조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배출표시 제외 대상인 경우 평가결과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단, PVC 재질의 식품용 랩필름은 제외)

Q11. 화장품 크림 에 있는 스파츄라도 평가 비대상인가요??

- A. 문의하신 스파츄러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포장재가 아닌 별도 제품에 해당하므로 평가 비대상에 해당합니다.

Q12. 핀셋을 담은 리드는 평가 비대상인가요??

- A.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를 의미하므로 리드(교육자료 62페이지,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류 평가 예시)는 핀셋을 담은 용도가 아닌 화장품의 보존성, 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포장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리드의 경우 평가대상에 해당합니다.

Q13. 금속핀이라고 하는 경우는 뒤에 힌지부분의 와카핀을 의미하는 건가요??

- A. 금속핀(교육자료 62페이지,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류 평가 예시)은 용기의 위아래 부분을 이어주는 핀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교육자료 상의 포장재는 금속핀과 금속접시가 복합된 복합재질 용기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Q14. 포장재 용기 재질 확인을 위해 용기 제조업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MSDS 자료만 제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질 분석 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A. MSDS나 자가품질위탁검사서 단독 제출 시 재질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장재재질구조 증명서나 재질분석시험 결과서 등 평가신청한 포장재에 대한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5. 샴푸 용기인데 용기와 펌프가 분리가 되는 경우이고, 펌프는 (플라스틱)+스프링(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리배출 표시를 어떻게 되는지요? 샴푸용기에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 A.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분리되는 다중포장재의 경우 각 부분품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리되는 펌프의 경우 동 지침 제6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할 경우 일괄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샴푸용기 분리배출 도안 아래에 일괄표시로 펌프:종량제배출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샴푸용기가 페트병에 해당한다면 포장재재질구조평가 결과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예상되며, 평가신청 후 결과서를 받고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여 출고하시면 됩니다. 재활용등급표시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상단, 하단 또는 측면(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해주시면 됩니다.

Q16. 30ml 이하는 분리배출표시제외인데, 재질구조 평가를 해야 되나요?

- A.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신다면 재질구조평가를 받아야하며 등급평가결과표시의무가 있는 포장재는 등급표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5조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배출표시 제외 대상인 경우 평가결과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단, PVC재질의 식품용 랩필름은 제외)

Q17. PTP 포장에 블리스터 포장이 포함 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PTP 포장은 플라스틱 시트를 가열성형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오목부를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개구부를 알루미늄 박으로 덮고 주변부를 기재에 접착한 압박포장으로 블리스터 포장 혹은 기포형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Q18. 포장재 몸체에 무광 코팅 등이 될 시에 몸체 재질에 코팅 재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 A. 무광코팅 시 사용되는 가소제, 첨가제, 안료 등은 재질에 해당하지 않지만 합성수지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재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1. 펌프만 개별로 판매할 경우, 개별적으로 등급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판매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나. 실제로는 병에 꽂아서 사용합니다. 펌프 수입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예시: 비닐 포장) 등급 평가 에 대한 표시가 어려운 경우라서 문의 드립니다.

- A. 개별 판매되는 펌프는 포장재가 아닌 "제품"에 해당합니다.(단, 내용물이 담긴 몸체와 같이 출고되는 펌프는 포장재에 해당) 따라서 "개별 판매되는 펌프"는 등급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개별 판매되는 펌프를 담은 포장재"는 등급평가 대상입니다.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분리배출표시제도

Q1. 도포첩합은 몸체에 일괄표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펌프에 별도로 도포첩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펌프는 소재,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등의 방법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몸체 분리배출 도안 아래에 일괄표시(펌프:종량제배출)를 하시기 바랍니다.

Q2. 알미늄 튜브 같은 경우 분리배출 표기 의무가 아닌데, 캡(마개) 경우는 알루미늄이 아닌 PP재질인데 그러면 분리배출은 기재안하고 캡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건가요?

A. 알루미늄튜브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니나, 캡 마개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캡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분리배출 표기 크기가 최소 8mm인데 포장재에 적당한 위치나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Q4. 부자재 / 폐기를 실적보고의 정확한 주체를 알고 싶습니다.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A. 환경부예규 제674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3호에 따라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문한자가 출고량 제출 등 제도의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Q5. 마스크팩 파우치는 의무대상 품목이 아닌가요?

A. 합성수지재질의 파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우치 재질 중 부직포를 사용할 경우 의무대상 품목에 제외됩니다.

Q6. ABS재질의 경우에는 OTHER 구분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걸까요? 여기에서 맨사출이 아닌 후가공(코팅)이 되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나요?

A. ABS는 두께에 따라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 도안을 사용하고, 그 아래에 표시재질로 OTHER을 기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의 분류 등은 공단 소관이 아니며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Q7. 생분해성 필름류는 포장재 필름류에 속해서 보고 대상인가요?

- A.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합성수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포장재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Q8. 합성수지재질로 된 파우치는 EPR 대상일까요? (부직포 아닌 재질)

- A. 합성수지재질의 파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해당합니다.

Q9. 도포/ 첩합 표기 적용 범위 문의

- 1) 복합재질 화장품 용기에 증착 또는 코팅 진행시 도포 첩합 인지?
- 2) 화장품 튜브 용기에 증착 또는 코팅 진행시 적용 인지?
- 3) 제품에 인쇄(박) 진행시 도포 첩합인지??

- A. 1)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금속 등의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종이재질 제외)이 혼합사용되었고, 해당부분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해야합니다.
2) 화장품 튜브용기 재질에 따라 다르나, 종이팩, 페트병, PSP, 기타 합성수지 용기에 분리 불가능한 타소재 재질이 혼합되거나 코팅, 첩합될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제품정보 표시에 필요한 인쇄(금박 등)를 한 정도는 도포첩합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분리배출 표시할 경우 자 타입 용기인데 여기에 리드가 들어갑니다. 리드가 50제곱이상이면 분리 배출표시 해야 하나요?

- A. 해당 리드의 재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분리배출 표시 대상입니다.
리드의 소재나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라벨 부착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Q11. PET-G 몸체에 분리되지 않는 복합 합성수지 재질 마개를 사용한 경우(금속 미 포함) 도포/첩합인가요??

- A. 도포첩합은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에 타 소재 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테이션)으로 부착된 것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몸체와 마개가 분리되는 되지 않더라도 별개의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도포첩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12. 화장품 용기중 튜브(TUBE)용기에 도포첩합표시 사용 필히 해야하는지요?

- A.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재질과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사용된 튜브 용기인 경우 도포첩합 표시 대상입니다.

Q13. 분리배출 표시방법 도안은 꼭 그 색상도 맞춰서 인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비닐류라면 꼭 보라색으로 제품에 도안 출력해야할까요?

A. 도안의 색상은 권고사항이며, 제품의 색채에 대비되는 색상 사용 가능

Q14. 종이튜브에(PE)접합이 되어있는것으로 하는데 이는 분리배출표기를 접합으로 해서 폐기로 구분해야할까요?

A. 종이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5. 종이 재질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종이"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기준 위반인가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위반임. 과태료 처분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

Q16. 향수병과 같이 유리 몸체+펌프 구조인데, 펌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분리배출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리 도안을 사용하시어 유리몸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시고, 펌프의 재질을 일괄표시(펌프:재질) 하시기 바랍니다.

Q17. 분리배출 표시를 제품 하면에 표기하면 위반일까요?

A.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의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Q18. 용기에 분리 가능한 라벨(보통은 라벨은 떼어낼수 있으니까)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도포첩합 마크를 붙여줘야 하는지?

A.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아래에 라벨:PE(예시)의 일괄표시

Q19. PET용기에 PE라벨 → 재질이 다른 라벨이 몸체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도포첩합 마크인가요? 아니면 일반 플라스틱 PET+라벨:PE로 표기해야 하나요?

A. 플라스틱 페트와 아래에 라벨PE로 표기

Q20. 분리배출 표시 용기안에 sus볼이 작은게 들어가 있는 경우 에이서스볼도 잡자재로 표시해야하는 걸까요? 분리는 가능합니다.

A. SUS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포장재로 사용된 경우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나,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등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분리배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21. 출고실적 작성할때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는데, 1.수출입실적증명서, 2.관세환급신청서, 3.외화획득용 구매 확인서, 4.영세율세금계산서 이중 첨부해야 하지만, 만약 자사 홈페이지에서 택배로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나, 국내업체에로 전달하지만 거기에서 전부 수출하는 경우는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출관련 증빙서류는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수출과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2. 알루미늄 튜브는 분리배출 표기 대상이 아닌가요?

A. 알루미늄은 캔 형태로 된 포장재만 분리배출 표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튜브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루미늄튜브에 합성수지 재질이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 도포첩합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23. PET G 재질의 용기가 아니고 블리스터(트레이)인 경우도 무색페트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블리스터(트레이)의 재질이 무색페트에 해당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품목코드 : 0450)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